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에
무면허 상태에서 5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추가〉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3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5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음주운전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서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을 반복했으나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¹⁾ 을 위반(<u>자동차등</u>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 <u>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u>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 ----- (제43조 ²⁾ 또는 제96조제3항 ³⁾)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 <u>동차등</u> ----- ----- -----위반한----- ----- ----- ----- ----- ----- -----.

현행	개정안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협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은 제44조제1항, 제2항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 같은 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고,⁴⁾ 제44조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위반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4일 이후 같은 항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됨.⁵⁾

최초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자에게 적용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산정하며(제80조의2제2항),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결격기간은 2년임.⁶⁾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2)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5)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6)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단서 생략)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최초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2024년 10월 25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2024년 10월 25일(같은 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경우)부터 2년 동안의 결격기간을 거친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날짜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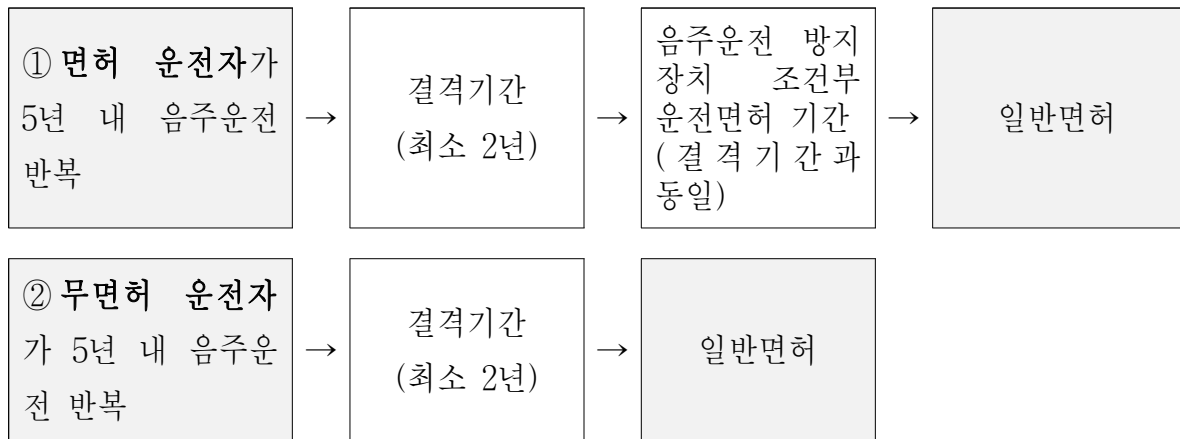
2026년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을 앞두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상태에서 5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5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이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인데 반하여, 무면허인 경우 결격기간 이후 바로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위법성의 정도가 큰 무면허 운전자가 일반면허를 더 빠른 시점에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반복 시 일반면허 취득 기간 >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 등을 한 것이 5년 이내의 반복에 해당하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1,273명임(2026년 7월 15일 기준).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5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2024년 10월 이후 음주

운전 등을 5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했어야 함에도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제도 초기에 발생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임.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제44조제1항·제2항 위반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5항 위반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재위반 사례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 경우 법률의 소급 적용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경찰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경찰청은 개정법률을 즉시 시행하여 신속하게 무면허 운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 운전자가 제외되는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0월 25일 위반행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